



위안화로  
차이나게!

이율확정기간 동안  
확정이율로  
든든하게!

주)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가입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확정 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차이나는 (무)ABL저축보험III

본 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위안화)로 합니다. 따라서 원-위안화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 은행 예금 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본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본 보험계약의 통화는 중국의 통화(위안화)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본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국의 통화(위안화)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님의께서 원화환산 납입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납입하는 금액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통화(원화) 입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 경제,  
이제 위안화에 투자할 때입니다.  
그래서 !!  
가장 먼저 ABL생명이 시작합니다.

**“위안화”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차이나는 무배당ABL저축보험Ⅲ!**



## 차이나는 (무)ABL저축보험Ⅲ의 차이나는 특징 3가지

### ★ 차이나는 외화저축보험

위안화로 납입하고 위안화로 받아, 통화 분산을 통해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보험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 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위안화)로 합니다.

따라서 원-위안화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차이나는 이율 적용

- 본 상품은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이율확정기간은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 이 상품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7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다만,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가입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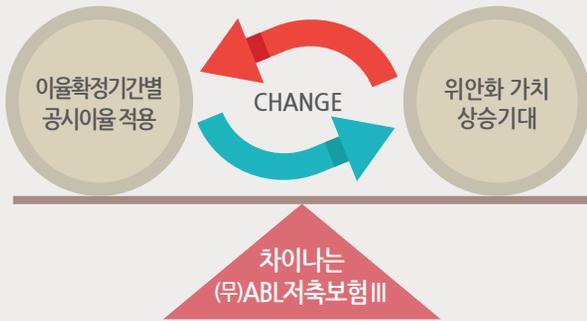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 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China는 세계 경제의 중심

-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위안화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업계 유일의 저축보험으로, 위안화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 차이나게! China로!

중국을 잘 아는 ABL생명의 '위안화' 투자 제안!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적용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5년 또는 10년)이 적용되는 상품으로입니다.

## 위안화 가치 상승 기대

통화 분산을 통해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며, 필요한 위안화 자금을 보험상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본 상품은 외화보험으로, 원-위안화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 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기간은 보험계약 가입시 선택(5년 또는 10년)이며, 이율확정기간은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가입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 적립이율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가입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매월 1일과 16일에 결정하여 이율확정기간 동안 확정 적용)
- 최저보증이율 :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7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

## 가입을 위한 안내

보험 형태	보험 기간	납입 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기본보험료 및 가입단위
5년 이율 확정형	5년 만기	일시납	만15세~80세	CNY ¥ 120,000 이상 ¥ 100 단위
10년 이율 확정형	10년 만기			

## 보험금 지급 기준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 (다만, 해지환급금이 사망보험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
만기 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계약자적립금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적립금이란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계약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로부터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입니다.
- 본 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위안화)로 합니다. 따라서 원-위안화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 5년 이율확정형

가입기준: 40세 남자, 일시납보험료 CNY 120,000,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2.22%, [2020년 3월 1일~3월 15일] 기준 적용, 단위: ¥

경과 기간	최저해지환급금 가정			해지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5%p 상승 시 가정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2.22% 가정		
	총납입 보험료	해지 환급금	환급률	총납입 보험료	해지 환급금	환급률	총납입 보험료	해지 환급금	환급률
3개월	CNY 120,000	93,878	78.2%	CNY 120,000	107,519	89.6%	CNY 120,000	115,191	96.0%
6개월		94,330	78.6%		108,534	90.4%		115,858	96.5%
9개월		94,784	79.0%		109,560	91.3%		116,530	97.1%
1년		95,241	79.4%		110,596	92.2%		117,206	97.7%
2년		97,092	80.9%		114,842	95.7%		119,952	100.0%
3년	98,984	82.5%	119,256	99.4%	122,768	102.3%			
4년	100,918	84.1%	123,846	103.2%	125,656	104.7%			
5년	128,618	107.2%	128,618	107.2%	128,618	107.2%			

### 10년 이율확정형

가입기준: 40세 남자, 일시납보험료 CNY 120,000,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2.40%, [2020년 3월 1일~3월 15일] 기준 적용, 단위: ¥

경과 기간	최저해지환급금 가정			해지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5%p 상승 시 가정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2.40% 가정		
	총납입 보험료	해지 환급금	환급률	총납입 보험료	해지 환급금	환급률	총납입 보험료	해지 환급금	환급률
3개월	CNY 120,000	93,920	78.3%	CNY 120,000	98,134	81.8%	CNY 120,000	113,021	94.2%
6개월		94,413	78.7%		99,104	82.6%		113,725	94.8%
9개월		94,909	79.1%		100,084	83.4%		114,435	95.4%
1년		95,409	79.5%		101,074	84.2%		115,149	96.0%
2년		97,435	81.2%		105,136	87.6%		118,054	98.4%
3년		99,510	82.9%		109,367	91.1%		121,039	100.9%
4년		101,634	84.7%		113,775	94.8%		124,106	103.4%
5년		103,809	86.5%		118,365	98.6%		127,256	106.0%
10년		144,351	120.3%		144,351	120.3%		144,351	120.3%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 비용 등)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시장가격조정률(MVA)은 20%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금액은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 (1) 상기 예시된 금액 중 '최저해지환급금 가정'의 해지환급금은 가입시 확정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한 계약자적립금에 보험기간 동안 시장 가격조정률(MVA)의 최대한도인 20%를 적용한 금액이고

- (2) 상기 예시된 금액 중 '현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5%p 상승 시 가정'의 해지환급금은 가입시 확정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한 계약자 적립금에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1.5%p 상승했음을 가정 하여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며

- (3) 상기 예시된 금액 중 '현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가정'의 해지환급금은 가입시 확정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한 계약자적립금에 현재 적용 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 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변경으로 인해 시장가격조정률 (MVA)이 변경된 경우 해지환급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7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 입니다.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매월 2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환급률은 보험료 누계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2020년 3월 1일 환율을 기준으로 1위안(CNY)은 원화 환산 169.16원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위안화)로 합니다. 따라서 원-위안화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ABL

## ABL 생명

1954년 출범한 ABL생명은 60여년의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그룹의 일원으로서 쌓아온 선진 상품개발능력, 디지털 고객서비스 환경을 기반으로 115만명의 고객에게 최상의 보험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을 보장하는 ABL생명

###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선진상품과 영업망

-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한 선진 금융 기법과 노하우, 변액·보장성보험부터 연금·저축성보험까지 폭넓은 상품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 보장
- 변액연금보험의 '금융자산운용방법' : 보험업계 최초로 특허 획득
- 리스크컨트롤펀드 : 중위험/중수익 추구형 시스템운용펀드
- 선진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고객중심 상품
-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 라인업으로 더 많은 고객의 니즈 보장
- 역량이 있는 2,400여 명의 FC(전속설계사)를 비롯해 방카슈랑스, GA(독립법인 대리점), GB(법인영업), 인터넷보험 등 다양한 판매채널 보유

### 든든한 재무력을 기반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회사

- 1954년 설립, 한국 시장에서 쌓아온 60여년의 역사와 전통
- 재무건전성 지표 RBC 비율 258.2% (2019년 12월 말 기준)

### ABL생명 사회공헌 나눔경영 활동

ABL생명은 '보험은 사랑'이라는 신념을 갖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 그 중에서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ABL생명의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모두는 소외된 이웃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나눔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온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01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 가. 특별계정의 설정

본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경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두는 금액)은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 나.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 (1) 회사는 해당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특별계정의 자산을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합니다.  
→ 이 보험의 자산은 이율확정기간에 해당 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운용하되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국채, 회사채, 구조화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을 그 주된 운용 자산으로 합니다.
- (2)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에서 정한 자산 운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① 금리 급변, 대량 해지 등의 급격한 시장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② 운용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③ 운용자산의 즉시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 (3) ①호 내지 ②호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설정시점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또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총 자산이 원화 1,0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는 ①호 내지 ②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02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아래와 같이 이율확정기간별로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율(이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라 함)로 합니다.

나. 가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최초 보험가입시 설정한 이율확정기간 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않습니다.

보험형태	이율확정기간
5년 이율확정형	5년
10년 이율확정형	10년

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기준금리 - 0.4%

- (주1) 기준금리 : 중국인민은행이 인터넷(<http://www.pbc.gov.cn>)을 통해서 매일 공시하는 CGB Yield Curve(중국국채 수익률)의 5년(5년 이율확정형), 10년(10년 이율확정형) 수익률로 하고, 매월 1일과 16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2, 3, 4번째 영업일(3일)의 평균기준금리로 합니다.
- (주2)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정하는 때에 해당 공시기관이 기준금리의 공시를 중단하거나 공시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시기관이나 공시방법을 적용하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정합니다. 다만, 공시되는 기준금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된 값을 적용합니다.

라.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7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과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바.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시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1)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자 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2) 시장가격조정률(MVA: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MVA = 1 - \left\{ \frac{1 + \text{보험가입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1 + \text{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0.4\%} \right\} \frac{\text{잔여월수}}{12}$$

다만,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3)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4) '라'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조정률(MVA) 계산 시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가' 또는 '나'호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과 16일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기준금리와 그 이후 매일 결정되는 기준금리와의 변동폭이 0.4% 이상인 경우에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과는 별도로 회사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계약에서 이율확정기간 동안 이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이율확정기간과 동일한 만기 구조를 갖는 채권 등에 투자하여 자산과 부채를 대응시키는 투자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등의 가격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의 이율확정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장가격조정률(MVA)은 해지환급금에 대응하는 자산의 시장가격(매각 손실 또는 이익)을 해지환급금에 반영하기 위한 비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 0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자금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외화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본 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위안화)로 합니다. 따라서 원-위안화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알아두실 사항

### 01 보험계약사항 기본 확인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0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납입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납입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여야 하며 모질종사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03 청약철회 청구제도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함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CSC)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iff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04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축)와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축)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축)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05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납입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이율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06 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07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08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정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09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기압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 11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함)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2)' (1)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 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12 불만족상담 및 민원상담 안내

#### <불만 접수(상담) 방법 안내>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소비자부 (우)07332
- 전화 : ABL생명콜센터-국번없이 1588-6500(이동전화: 02-1588-6500)
- 팩스 : 02-3787-8719
- 인터넷 : [www.abllife.co.kr](http://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 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 e-mail : [customer@abllife.co.kr](mailto:customer@abllife.co.kr)
- 기타 상담(문의) : 당사 전 영업점, 지급창구 및 은행 전 영업점
-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서울본부 : 02-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2262-6570 / 영남지역본부 : 051-558-7801~4 / 대구지부 : 053-427-8051 / 호남지역본부 : 062-350-0111~4 / 중부지역본부 : 042-242-7002~4 / 원주지부 : 033-761-9672~3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32 (이동 전화는 지역 번호-1332)

### 13 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http://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fia.or.kr](http://www.kfia.or.kr)(생명보험협회)

##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으로 보험판매를 할 수 없고, 타 보험회사의 유사상품 3종 이상을 필수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은행의 지정된 보험판매자만이 보험판매가 가능하고, 전화 등 고객과 비대면 방식의 보험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http://www.fss.or.kr))

판매사

보험사

##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0733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 타워 콜센터 1588-6500 방카슈랑스사업부 02-3787-7777

2020. 03. 16 방카슈랑스사업부 제작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PA57호(2020.03.16)